2019년도 제2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Ⅰ. 일 시 : 2019년 10월 14일 (월) 19:10~20:20

Ⅱ. 장 소 : 법인회의실

Ⅲ. 참석자 : 대표이사 박
이 사 이 , 김 정 황 , 옥
감 사 하 , 김

Ⅳ. 의안

- 제1호 의안 :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
- 제2호 의안 :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
- 제3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의 건
- 제4호 의안 : 법인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

Ⅴ. 보고사항

- 2019년 법인 4분기 중점사업 계획 보고

Ⅵ.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대 사 : 법인 사무 에게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시 : 간단한 인사와 이사회 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함.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대 : 2019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회 선언과, 개회인사를 함.

2. 전차회의록 처리

대 : 사 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함.

사 : 전차이사회 회의록(2019년 07월 11일)을 자료를 토대로 낭독함. 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는 이사 총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제1호 의안 2019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의결, 제2호 의안 법인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건, 제4호 의안 법인기본재산 임대 계약 갱신의 건, 제5호 의안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신청 승인의 건, 보고사항으로 2019년 법인 하반기 중점사업 계획 보고, 2019년 법인 산하시설 환경개선 사항 보고, 절영지역아동센터 사업 종료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음.

황 사 : 전차회의록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음으로 전차회의록을 채택하길 제안함.

김 사 : 동의함

이사 : 재청함.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함.

대 사 : 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2019년 07월 11일) 전차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3. 의안채택 및 심의

대 : 의안심의에 앞서 의안채택을 제안함.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호 의안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 제2호 의안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이며 일괄

채택하여 호별 심의 하고자 하며, 이외 추가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안에 대해 요청함.

황 사 : 추가의안이 없으며, 대. 가 제안한 총 4개의 의안에 대해 채택하여 순서대로 심의 하는 것에 동의함.

이 : 재청함.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함.

대. :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은 제1호 의안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 제2호 의안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진행할 것을 선언함.

가. 제1호 의안 :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

대 : 제1호 의안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을 상정함.

사 : 제1호 의안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서. 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서 장 : 최근 장기화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수요의 증가, 다양한 공급주체로 인한 노인돌봄사업의 분절적 수행, 늘어나는 노인복지급여에 따른 각 지역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 노인복지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시행되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있음. 이에 우리법인 산하시설 중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및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정구와 영도구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함.

김 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대상과 운영방법에 대해 물음.

사 ㅏ : 본 사업은 노인인구 ·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정하고, 권역별 각 1개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초기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등 포함),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서비스를 받음.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연1회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돌봄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그 외 노인돌봄사업에 제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적으로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며, 연계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자원연계서비스가 제공됨. 위탁 기간은 3년임

황 ㅣ 사 : 본 사업의 서비스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음

사 · : 현재 영도구의 경우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은 영도구 2권역(동삼 1·2·3동, 청학2동)공모 예정이며, 금정구는 1권역(장전,청룡노포,남산,구서,금성동), 2권역(부곡,선두구동), 3권역(서동,금사동,금성동) 중 1곳을 공모 예정임.

대 · : 사무국장의 설명내용과 자료를 참조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석이사에게 의견 물음.

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대상 노인들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비용 장기요양 보험진입을 예방하고, 통합적 서비스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옴.

황 ㅏ : 신규사업 위탁에 대해 법인산하 2개 기관이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함으로 이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대: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해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1호 의안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함.

김　　사 : 동의함.

이　　사 : 재청함.

참석이사전원 : 찬성함.

대　　ㅏ : 제1호 의안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건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나. 제2호 의안 :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

대.　ㅏ : 제2호 의안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을 상정함.

사　　장 : 제2호 의안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에 대하여 와치노인복지센터 서　　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서　　장 :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의 경우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과, 노인주간보호 이용에 대한 시설환경의 한계, 지역 내 대규모 주간보호센터의 설립으로 이용인원의 감소 등으로 현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인주간보호사업을 종료하고자 함. 특히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속직원 6명의 급여지급 후 잉여재원은 10%정도이며, 올해 상반기 사업 운영시 6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약10년 간 노인주간보호 수익금으로 운영했던 운영충당적립금도 올 하반기에 소진되어 이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을 종료하고자 함.

이　　사 : 사업종료에 따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 묻고 김진철이사가 사업종료에 따른 절차를 함께 물음

사　　· : 와치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사업 종료절차 및 종사자 고용에

대하여 서.　　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서.　　장 : 현재 와치노인복지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사업 종료 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시 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2019년 연말까지 운영한 후 차기년도 1월 10일전에 마지막 요양청구를 마치고 폐업을 계획하고 있음. 폐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단이관으로 처리예정임. 또한 사업 종료 전에, 이용자 13명의 경우 보호자 간담회를 통해 영도 지역 내 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안내를 통해 보호자와 이용자가 직접 이관할 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종사자 6명의 경우 조리원을 제외한 5명은 계약직으로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나, 조리원과 운전원은 복지관으로, 요양보호사 2명은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센터 내 다른 사업으로 보직 변경하여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잔여재산은 시설로 귀속처리하며, 내용연수초과 비품은 불용처리하며, 그 외 사용가능한 비품 필요에 따라 시설로 이관할 예정임. 또한 사업 종료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대.　　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석이사에게 의견을 물음.

김　　사 :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에 따라 이용자 및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진행하고, 상호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함.

대　　사 : 더 이상 부가적인 질문은 없으며, 제2호 의안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함.

옥.　　사 : 동의함

이.　　사 : 재청함.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함.

대　　사 : 제2호 의안 와치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사업 종료의 건에 대해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다. 제3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의 건

대　　사 :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 계약의 건을 상정함.

사　　장 :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의 건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제28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거하여 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고자 함.

법인 임대 계약 건물 (구서동 수림로 50번길 202) 중 기존 임대인(1층 도기)의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 받음. 이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건물 계약을 진행함. 월임차료 및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새롭게 계약함. 기본재산 임대의 경우 기본재산 처분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임으로 이에 시도의 허가를 득해야 함.

기본재산 임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개별호실			관련지번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86-7번지			
구분	면적(㎡)	현) 계약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만료일	계약기간
1층	25.28	경북상회(정주환)	60,000,000	1,900,000	2021.08.31	2018.09.01.~2021.08.03
1층	8.84	현대철물(양진자)	20,000,000	530,000	2021.08.31	2018.09.01.~2021.08.03
1층	7.43	이경순	10,000,000	770,000	2021.08.31	2019.09.01.~2021.08.03
2층	171.04	한국테크로	20,000,000	840,000	2020.10.31	2018.11.01.~202010.31
3층	171.04	수림교회(한남웅)	30,000,000	600,000	2021.09.30	2019.10.01.~2021.09.30
지하	117.42	(최재은)	2,000,000	300,000	2020.09.15	2018.09.16.~2020.09.15
합계			142,000,000	4,940,000	(※ 월임대료 부가세포함)	

개별호실			관련지번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43 내구분의 3-4호, 3-6호			
구분	면적(㎡)	현) 계약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만료일	계약기간
1층	79.80 57.75	김선우	2,000,000	460,000 (부가세별도)	2020.11.03	2018.11.04.~2020.11.03

대 [illegible] : 우리 법인에서 관리하는 임대건물은 금정구 구서동 지역과, 서구 남부민동 총 2개 지역의 건물에 대한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

사 [illegible] : 구서동 건물 임대인 중 3층 수림교회(한 [illegible]용)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계약 해지할 가능성을 여러 번 이야기 하였으며, 또한 서구남부민동 임대인의 경우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임대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말함. 이에 임대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 중임.

대 [illegible] : 임대 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 이사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계약자 변경에 대하여 사무국에 위임해줄 것을 제안함.

김 [illegible] 사 :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임으로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이 사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임대와 관련하여 행정적 처리를 사무국에 위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할 것에 대해 동의함.

대 [illegible]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해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 기본재산 내 임대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국에 위임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 의안 법인기본재산 임대 계약의 건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가결할 것을 요청함.

황 [illegible] 사 : 동의함.

옥 [illegible] 사 : 재청함.

참석이사전원 : 찬성함.

대 [illegible] : 제3호 의안 법인기본재산 임대계약의 건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라. 제4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

대 ㅏ :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을 상정함.

사 :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법인 기본재산 내 방치된 묘지가 법인 이전 전부터 다수가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하는 아동노인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지 못함으로 법인의 자연환경을 더욱 활성화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묘지 후손을 찾아 이장하고자 함.

대 : 현재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에 대한 방치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함.

사 : 법인 시설 뒷산에 묘지는 총 11기가 있으며, 묘지 이장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하였으며, 금정구청을 통해 분묘개정허가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확인하고 추진 중임. 현재 총 9기는 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문중과 협의하였을 때 2,300만원의 묘지이장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묘지 이장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지정후원개발을 하고자 함.

김 사 : 현재 본 안건에 대해 법인사무국에서 많은 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추가적인 사항은 물론 묘지이장에 따른 비용을 법인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제4호 안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제안함.

대 ㅏ : 본 안에 대한 추가의견을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을 법인 사무국에 위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으

로 승인하며, 이에 대해 가결할 것을 요청함.

사 : 동의함.

황 사 : 재청함.

참석이사 전원 : 찬성함.

대 사 : 제4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토지(노포동) 내 묘지 이장의 건에 대하여 법인 사무국에 위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을 참석이사들의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V. 보고사항

대 :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보고사항을 사 에게 보고 할 것을 요청하고 사 이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보고사항을 설명함.

1) 2019년 법인 4분기 중점사업 계획보고

2019년 법인 4분기 중점사업 계획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2019년 법인과 산하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의 사업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2025년 법인 비전을 구체화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특히 4분기에는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는 10월 법인자선골프대회, 11월 법인사무국 각 실별 워크숍, 12월 법인 창립기념식이 계획되어 있음. 청소년장학기금마련 자선골프대회는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진행 예정이며, 올해는 부산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참여팀선발, 경기운영 등 전반적인 진행을 할 예정임. 그 외 우리법인에서는 시상식 진행, 감사패준비 등 지원 예정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임으로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림.

대 ㆍ ㆍ : 위 보고사항 이외 추가질문 및 의견을 부탁드림.

김 사 : 이사회 준비를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법인사무국장 이외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황 사 : 다른 추가질문사항 없음.

대 : 본회의 상정된 안건 및 보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함 (20시 20분).

- 이하여백 -

위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함.

2019년 10월 14일 (월)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박 (인)

이 사 (인)

이 사 김 (인)

이 사 이 (인)

이 사 정 (인)

이 사 황 (인)

이 사 옥 (인)

이 사 이 (인)

감 사 하 (인)

감 사 김 (인)